

의안번호	2125082
의 퇴 인	권은희 의원
회 답 일	2023.11.03.
추계번호	23C4522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1항)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승진 및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 기여금을 내야 한다. (제2항) 임용제외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며, 재직기간 합산으로 발생하는 미납기여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70조를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안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안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 임용제외기간으로 인한 승진 및 호봉 확정, 공무원 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용제외교원의 승진 및 호봉인상에 필요한 근무경력 인정 및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산입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임용제외교원”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법상 정한 사유¹⁾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른 특별채용 또는 다른 사유로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으로 정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6월 정0옥 등 186명²⁾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대상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함³⁾

□ 다만, 제정안에 따른 호봉 인상분, 연금부담금 등은 각각 개별 교원의 채용 당시 호봉, 현재(퇴직시) 호봉 및 근무연수, 퇴직여부 등에 따라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11768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3. “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나.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의 신청인원은 185명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경정절차를 통하여 186명으로 확정되었다고 함

3)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제5권] p9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되나, 경력 반영을 위한 절차 및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비용에 대한 추계가 어려움

- 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된 것으로 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으로 정하여
법 적용대상 인원은 186명 중 교원으로 임용되었던 184명으로 추정됨
- 다만, 호봉인상분 및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인상분 등에 대한 추계를
위해서는 개별 교원의 채용 당시 호봉, 현재 또는 퇴직시⁴⁾ 호봉 및 근무연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 중 실제 재직기간에 반영될 비율 등이
결정되어야 하나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시점에서 소요되는 비
용에 대한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
어 동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4) 신청인의 학번(71학번, 75학번, 78학번, 79학번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중 다수가 퇴직하였을 가능성
이 있음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